

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추미애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5·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신설하여,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5조 제1항제3호 신설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.

(전문위원 박 병 섭)